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**1회차** 지원금 신청 방법안내

# 신청 전 필독사항!

## 1. 급여 지급 후 신청해주세요.

- 정규직채용일(전환일)로부터 **6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.** \* 6개월 이전 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(지급가능 인원수는 다시 복원)
- ex) 1월 1일 채용자 :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가 필요하므로  
1월 ~ 6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- ex) 1월 2일 채용자 : 7월 1일까지 고용유지가 필요하므로  
1월 ~ 7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- ex) 1월 15일 채용자 : 7월 14일까지 고용유지가 필요하므로  
1월 ~ 7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.

## 2. 신청기한을 확인해주세요.

-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ex) 1월 1일 채용자 : **6월 30일 익월**부터 2개월 이내이오니,  
8월 말일까지입니다.
- ex) 1월 2일 채용자 : **7월 1일 익월**부터 2개월 이내이오니,  
9월 말일까지입니다.
- ex) 1월 15일 채용자 : **7월 14일 익월**부터 2개월 이내이오니,  
9월 말일까지입니다.

# 신청 전 필독사항!

## 제출 서류 안내

1. 지원금 지급 신청서(붙임1 서식8)
2. 사업주 확인서(붙임1 서식8-1)
3. 기업통장 사본(지급 받으실 통장, 최초 1회시에만 제출)
4. 근로계약서
  - 앞서 제출하셨던 기업에서도 제출 바랍니다(갱신 된 경우, 2개(기존+갱신) 모두 첨부 바랍니다)
5. 급여명세서
  - [1월 1일] 채용자의 경우 1~6월 급여
  - [1월 2일] 채용자의 경우 1~7월 급여
  - [1월 15일] 채용자의 경우 1~7월 급여
6. 급여이체 확인증
  - [1월 1일] 채용자의 경우 1~6월 급여
  - [1월 2일] 채용자의 경우 1~7월 급여
  - [1월 15일] 채용자의 경우 1~7월 급여

# 신청 전 필독사항!

구비서류가 모두 준비 되셨을 때

다음 안내에 따라서

신청 바랍니다.

사업소개

운영기관

알림마당

마이페이지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
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 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
청년일경험지원사업

운영기관 조회

공지사항  
서식자료실

3 **사업참여관리(도약장려금)**  
사업참여관리(미래청년)  
사업참여관리(디지털)  
사업참여관리(일경험)  
나의 정보관리

##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2022년 시행)

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 
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

더 알아보기

신청하기



### 고용유지 인건비 지원 (2020년~18 / 2021년~18)

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 
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

더 알아보기



###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(2021년 시행)

청년을 신규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 
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

더 알아보기



#### 공지사항



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	2022-01-19
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	2022-01-19
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, 미래청년인재육...	2022-01-03

#### 서식자료실



[서식]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	2021-02-01
[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...	2021-02-01
[서식]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...	2021-01-18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1)

1.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 (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) 접속
2. 기업 로그인
3. 마이페이지 - 사업참여관리(도약장려금) 클릭

## 사업참여관리(도약장려금)

### > 기업정보

기업 정보 수정

기업명	(주)홍길동
지사명	본사
대표자	홍대표
소재지	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

참여신청관리

채용자명단관리

지원금관리

1

• 지원금 지급 및 추가지급 회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> 지원금 지급 현황

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(1명) - 진주상공회의소

2

지원금신청

#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2)

1. 지원금관리 클릭

2. 지원금신청 클릭

# 『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』 지원금 지급 신청서

▶ 지원금 지급 신청서

▶ 지원금신청번호 : P20220006403()

▶ 지원금 신청 현황

담당운영기관	진주상공회의소	고용센터	진주고용센터
신청일자		접수일자	
지급일자		처리상태	
지급구분			

▶ 대표 사업장 현황

사업장명	<b>(주)홍길동</b>		
대표자명	<b>홍대표</b>	기업유형	
사업자등록번호 (지사번호)	<b>1234567890</b>	법인등록번호	
업종	산업 단체	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	<b>12345678901</b>
소재지	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		
피보험자 합계	16 명	설립일	1998-01-01

## 1. 기재된 내용 확인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4)

## ▶ 첨부파일 등록

<p>1 근로계약서 첨부파일</p>	<p>※ 파일은 최대 1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(첨부용량 : 10MB 이하)</p> <p>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ptx, dcc, docx, hwp, xls, xlsx, pdf, txt, zip, egg 파일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text"/></p> <p><b>파일찾기</b>    선택파일삭제</p>
<p>2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파일</p>	<p>※ 파일은 최대 1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(첨부용량 : 10MB 이하)</p> <p>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ptx, dcc, docx, hwp, xls, xlsx, pdf, txt, zip, egg 파일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text"/></p> <p><b>파일찾기</b>    선택파일삭제</p>
<p>3 기타 첨부파일</p>	<p>※ 파일은 최대 1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(첨부용량 : 10MB 이하)</p> <p>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ptx, dcc, docx, hwp, xls, xlsx, pdf, txt, zip, egg 파일입니다.</p> <p><input type="text"/></p> <p><b>파일찾기</b>    선택파일삭제</p>

## ▶ 기업명의 계좌정보

• 계좌번호 작성 시, '-'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---

4 은행명            예금주명   

### 1. 근로계약서 첨부

- 여러명일 경우, 하나의 파일로 첨부

### 2.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

- 여러명일 경우, 하나의 파일로 첨부  
- 채용일로부터 **6개월간의 자료**를 모두 첨부

ex) 1월 1일 채용자는 1~6월까지의 급여  
ex) 1월 15일 채용자는 1~7월까지의 급여  
\*최소고용기간 6개월 적용시, 7월7일까지의  
급여증빙이 필요하기 때문

### 3. 기타 첨부파일

- 지원금신청서/사업주확인서/통장사본 첨부  
(PDF 또는 압축파일로 일괄첨부)

파일이 항목당 1개 밖에 업로드가 되지않아  
압축 및 PDF 병합 작업이 어려운 담당자께서는  
첨부파일을 아래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 
(kang6748@korcham.net)

### 4. 지급받을 계좌내용을 기재

- 첨부된 통장사본과 동일한 계좌여야 함



## ▶ 신청내용

이름	채용일	신청대상기간 (신청회차)	구분	장려금
		지급대상기간		
선택	주민등록번호	채용종료일	채용구분	
	정규직전환일	지원종료일	월 보수액   주 근로시간	
비고(운영기관, 고용센터 조회 가능)				

1

+ 항목추가

삭제

- 신청대상기간은 지급차수별\* 대상기간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음
- \* 2022년도에 한하여 1회차(3개월), 2회차(3개월), 3, 4, 5회차(2개월)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\* 2023년부터는 1회차(6개월), 2, 3, 4회차(2개월) 지원금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.

## 1. 항목추가 클릭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6)

워크넷 -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- Chrome

work.go.kr/youthjob/popup/retrievePopUpSptfndAppTargetList.do?prcpRqdoMnno=P20220006403

##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

성명

신청가능대상만 조회

선택	성명	생년월일	신청회차	신청대상기간	신청금액	지급금액	검토금액	신청일	접수일	지급일	처리상태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김도약	1990-01-01	1회차	2022-01-01	2022-06-30						

1. 지원금신청 대상자 선택

2. 적용 클릭

▶ 신청내용

이름	채용일	신청대상기간 (신청회차)	구분	장려금
		지급대상기간		
선택	주민등록번호	채용종료일	채용구분	
	정규직전환일	지원종료일	월 보수액   주 근로시간	
비고(운영기관, 고용센터 조회 가능)				
김도약	2022-01-01	2022-01-01 ~ 2022-06-30 (1회차)	신청금액	4800000 4,800,000원
1990-01-01-*****		정규직 채용	검토금액	0 원
<input type="checkbox"/>		2,300,000원   주 40시간	지급금액	0 원

2

+ 항목추가 삭제

• 신청대상기간은 지급차수별\* 대상기간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음  
 \* 2022년도에 한하여 1회차(3개월), 2회차(3개월), 3, 4, 5회차(2개월)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 
 \* 2023년부터는 1회차(6개월), 2, 3, 4회차(2개월) 지원금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.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7)

## 1. 신청금액 확인

\* **통상적으로**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6개월간 지급되었을 경우엔 **4,800,000원**(800,000 x 6개월)

**그러나**  
(청년의 중도퇴사, 기업의 휴업 등의 사유로)

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된 월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80%만큼을 지급

예) 90만원 지급될 월은,  
900,000 x 80% = 720,000원 지원가능

## 2. (필요 시)항목추가 클릭

- 추가대상자 정보 입력

## 3. 최종 신청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8)

## 1. 사업주 확인사항 체크

## 2. 신청 클릭

▶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

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(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)*	
① 소비·향락업,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학교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⑤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*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⑦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*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(3개월 이내)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아니요

1

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(장려금신청시 기준) (*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)*	
① 채용일 현재 청년(만 15세~34세 이하) * 단,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* 취업중인 자: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,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* 단, 「특례」(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)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에 체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, 고용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⑤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*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(재)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*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(월 최대 80만원)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아니요에 체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* 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기타*	
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를 없음을 확인함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인
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행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·지급제한·철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*	<input type="radio"/> 예 <input type="radio"/> 아니요
사업주명* <input type="text" value="홍길동"/>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* <input type="text" value="000000"/> - <input type="text" value="0000000"/>	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(**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)	

임시저장 **신청** 목록

2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절차(9)

## 사업참여관리(도약장려금)

### 기업정보

기업정보수정

기업명	(주)홍길동
지사명	본사
대표자	홍대표
소재지	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

참여신청관리

채용자명단관리

지원금관리

• 지원금 지급 및 추가지급 회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지원금 지급 현황

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(1명) - 진주상공회의소

지원금신청

• 지원금 지급 신청서 1차 - 지원금관리번호 : P20220006403(1)

상세보기

운영기관 | 진주상공회의소 | 고용센터 | 진주고용센터

신청일자 | 2022-07-05 | 신청인원 | 1명 | 신청금액 | 4,800,000원

지급일자 | | 지급인원 | 0명 | 지급금액 | 0원

1

처리상태 | 신청

## 1. 처리상태 확인

- 처리상태 : 신청  
\* 최종 제출 완료

- 처리상태 : 작성중(임시저장)  
\* 미제출 상태 상세보기 클릭 후 제출

# 주의사항 안내

## 1. 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
- 해당 청년 뿐만 아니라,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없어야 합니다.
- 인위적 감원 발생 시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으나 그 즉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, 향후 6개월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.(제한된 6개월동안의 채용자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)

## 2. 참여청년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

- 최소고용기간(6개월)이 미충족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## 3. 참여청년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

- 고용보험 상실일자까지,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## 문의처

기획조사부 강성원 주임 / 김대호 사원

Tel 055-753-0413

Fax 055-758-8220

